

자동차 운전사의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해자가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뛰어서 A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공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

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이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재고를 요청하여 상고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살펴보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있는지

즉,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논쟁이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12. 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하여 관례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2.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관례는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결론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

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